#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62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서미화・김선민・김재원

이기헌 • 황운하 • 전종덕

강선우 • 이병진 • 박민규

윤종오 · 김영배 · 김현정

용혜인 · 정태호 · 이춘석

김원이 • 이언주 • 이수진

김남희 · 남인순 · 한창민

장종태 · 소병훈 · 박희승

정혜경 · 송재봉 · 김예지

추미애 • 안규백 의위

(2991)

#### 제안이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

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제2조및 제4조).
- 나. 매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10조의2).
- 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 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규정함(제46조의3 신설).
- 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인 장

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감안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그 고유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함(제54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 통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말한다.
-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장애인은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가족 상황, 생활시설 거주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안전관리에"를 "자립생활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을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송 및 언론, 장애인 및 가정,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자립생활의 지원"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 향유와 역량의 발휘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장기 시설 입소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 2. 시설 입소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상담·교육·홍보
- 3.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전환지원 서비스

-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개인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수리, 임대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 간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의 직업 활동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 9.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전 과정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조의2(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거나 시설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 및 보호자, 학대 피해 장애인 등이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

- 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한 홍보, 상담, 지원 필요도 조사, 희망자 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62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입소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3조의3(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의 2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시설 입소 이전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 3. 장애인 개인이 계약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의 제공
  - 4. 중증장애인 1일 최대 24시간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권한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 제53조의4(자립생활주택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원할 경우 일정기간 자립생활 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각종 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주택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및 육성에"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 ·구 1개소 이상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선택 강화
- 2. 장애인의 민주 시민 역량 증진
-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 4.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5.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
- 6. 장애인 기본권 향상 활동
- 7. 기타 장애인 동료 간의 자조 및 옹호
- ⑥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장애인 및 관련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 및 판정, 이의신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료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매년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직원 또는 소속 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54조의3(자립생활 권리의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를 장애인, 장애인가족, 학생, 공무 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홍보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
	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
	통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 ③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장애인은 성별, 나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가족 상황, 생
	활시설 거주 등에 관계없이 지
	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의 <u>안전관리에</u> 관한	5 <u>자립생활에</u>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	6. <u>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u>

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제53조(자립생활지원) ① 국가와 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 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 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의 장애인 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 을 위하여 장애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 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송 및 언론, 장애인 및 가정,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홍보 등의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 발 ·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자립생활 권리보장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의 기 회 향유와 역량의 발휘를 통하

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신 설>

- 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여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 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장기 시설 입소 방 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 2. 시설 입소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상 담 • 교육 • 홍보
  - 3.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 역사회 전환지원 서비스
  -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개인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수 리, 임대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보 수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 간 동료상담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 8. 장애인의 직업 활동 및 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 9.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옹호 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전 과정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 활지원시설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할 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3조의2(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 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거나 시설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 및 보호자, 학대 피해 장애인 등이 자립생활 지 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 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 한 홍보, 상담, 지원 필요도 조 사, 희망자 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62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입소자의 지역사회 내자립생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
3조의2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
하거나 시설 입소 이전에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
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
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 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 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한다.
- 1.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 3. 장애인 개인이 계약하고 생

   활할 수 있는 주거지의 제공
- 4. 중증장애인 1일 최대 24시간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권한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 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3조의4(자립생활주택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장애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①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 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 ②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 인 개인이 원할 경우 일정기간 자립생활 지원 제도를 이용하 며 각종 전환지원서비스를 제 공받도록 자립생활주택을 운영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립생활주택 및 관련 서비스 제 공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자 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립 생활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 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 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한다.
- -----장애 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및 육 성에-----

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 설>

<u><신 설></u>

- -----
- ③
   -----장

   애인자립생활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 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1개소 이상 제1항 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선택 <u>강화</u>
- 2. 장애인의 민주 시민 역량 증<u>진</u>
-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 4.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5.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
- 6. 장애인 기본권 향상 활동

<신 설>

<신 설>

- 7. 기타 장애인 동료 간의 자조 및 옹호
- 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제32 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 합조사 시 장애인 및 관련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 및 판정, 이 의신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료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할 수 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 인복지시설 등은 장애인자립생 활센터가 제1항 및 제5항에 따 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54조의2(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매년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

<u><신 설></u>

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직원 또는 소속 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는자를 우선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자립생활 권리의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를 장애인, 장애인 가족,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홍보 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